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9 발의연월일: 2024. 6. 25.

발 의 자:정준호·강훈식·김현정

민병덕 • 민형배 • 박홍근

송옥주 • 이광희 • 이수진

차규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제3자로부터 감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음(2023년 3월 21일, 제31조의2 신설).

그런데 현행법 제20조에서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두어 감사인,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인·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. 이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행위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.

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

으로써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20조).

법률 제 호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경우 또는 증권선물위원회"를 "경우, 증권선물위원회"로, "경우에는"을 "경우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31조의2에 따른 법원의 요구로 관련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록 송부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이 제31조의2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0조(비밀엄수) 다음 각 호의	제20조(비밀엄수)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			
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			
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			
용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			
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			
경우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	경우, 증권선물위원회		
제26조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			
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			
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			
독기관이 하는 감리 · 조사에			
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	<u>경</u>		
인정한 <u>경우에는</u> 그러하지 아	우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3		
니하다.	1조의2에 따른 법원의 요구로		
	관련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는		
	<u>경우에는</u>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